

## 2006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 I. 서 론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는 한편으로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검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 이론과 판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결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국내언론관계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판결은 없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 성 선 제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려대 법대 졸
- 미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 미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무부의 해미르 미국변호사

즉, 신문법 위헌 결정으로 대변되는 이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격 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되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같이 사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판결들도 많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언론사간 소송도 예년과 같이 많이 나오고 인터넷 관련 소송도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에 대한 주요 판결의 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의 범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 중 언론과 관련되고 의미가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관한 판결이라 함은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광의로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판결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판결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인터넷상 공개된 대법원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이하에서는 2006년의 언론관계판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신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최근 정치적·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신문법 위헌 결정

### 1. 사실개요

국회는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종전의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로 바꾸면서 전문 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신문법 제16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 7. 28.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었다. 청구인들은 2005. 2. 16.(2005헌마165), 같은 해 3. 23.(2005헌마314), 같은 해 6. 9.(2005헌마555) 및 같은 해 8. 26.(2005헌마807)에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특정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2006헌가3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05. 7. 26.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1면에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라는 제목 하에 도청테이프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청신청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작성·게재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반론 보도문'을 작성·게재하라는 조정을 하였는바, 국가정보원은 위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위 사건의 계속 중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6. 1. 19. 제청신청인의 신청대상 조항 중 일부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불합치를 제정하였다.

## 2.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편집인의 편집 자율 보장 의무나 신문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편집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나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없다며 각하를,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그리고 일간신문끼리의 복수소유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sup>1)</sup>

판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각하’ 판결의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들이 추상적, 선언적, 권고적 성격의 규정이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즉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들은 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고, 나아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에 배치되는 신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신문법 재개정의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중 미디어를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경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부분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15조 제3항은 나아가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1) 2006. 6. 29. 자. 헌재 결정,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 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둘째,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셋째, 그 취급분야와 독자층이 완전히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 따라서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하여 규제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하여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의 취지에 맞다. 따라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

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소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Ⅲ. 안기부 'X' 파일 사건

#### 1. 사실개요

MBC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04. 12. 5. 재미교포 박모 씨로부터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4. 9 경, 같은 해 9. 9 경, 같은 해 10. 7. 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2005. 7. 22. MBC 「뉴스테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위 도청자료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2005. 7. 21.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2005. 5. 하순경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도청, 제작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이 존재한다는 풍문을 듣고 편집부 소속 기자에게 위 도청테이프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위와 같은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한 후 같은 해 8. 초순경 월간조선 사장과 논의하여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5. 경 편집국 소속 기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발간된 2005년 9월호 월간조선 94쪽부터 125쪽에 『유령처럼 떠돌 안기부 X파일 전문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 원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

장에게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sup>2)</sup> 법원은 이상호 기자의 혐의 부분에 대해 “자료의 입수 당시에 이미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보도를 통하여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 자료들과 이를 기초로 한 MBC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자료들에 담겨 있던 내용은 그 정보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는 것이 부득이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이상호 기자가 위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녹취보고서 및 녹음테이프를 제공한 박 모 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위 자료들을 넘겨받는데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자료들에 담겨진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보에 의하여 우연히 위 자료들의 내용을 알게 된 기자가 취재의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이상호 기자 및 MBC가 위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한 뒤 위 자료의 진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언론기관으로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자. 선고 (2006고합177) 판결.

를자문을 통하여 공개에 대한 관계 법령의 검토를 하는 등 보도에도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전체적으로는 MBC의 보도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상호 기자나 MBC가 최초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정당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위 대화의 당사자들이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른바 떡값 등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이 사건 보도는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보도의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김연광 편집장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월간조선의 보도는 앞서 본 MBC의 보도와는 달리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전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적합한 보도의 수단 및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때 월간조선의 전문계재는 이러한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므로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3. 항소심 판결 요지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sup>3)</sup> 항소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언론 자유의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 다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그 언론 보도의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존재 자체를 거부한 독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문제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 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안기부 ‘X’ 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자. 판결(2006노1725).

의 산물임에 주목하고, 재벌과 언론사주가 8년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이나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또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물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서도,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므로 애당초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기부에 의해 대선기간 중 재벌 실세와 언론 사주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불법 도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로 녹음테이프까지 확보되었음을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더욱 크게 침해하였으며, 적어도 언론기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보도 관련자 누구에게나 분명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 당시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된 대선이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을 때였고, 그러므로 보도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 함은 지나친 것이고,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다고

긴급성을 부인하였다.

또한 MBC나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소속 기자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언론사주와 재벌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실상을 공개하였고,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IV. 명예훼손 소송

### 1. 언론사 패소 판결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취재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미진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에 패소판결을 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MBC가 2004. 2. 16.과 2004. 2. 2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학교는 나 몰라라’와 ‘수업 중 왕따 촬영’ 제하의 보도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동영상에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 이미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방영하자 자살한 중학교 교장의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살한 중학교 교장의 유족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sup>4)</sup>

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다른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경남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윤 모 씨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 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위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2. 언론사 승소 판결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언론사 승소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T사는 SBS와 피고 학생들이 2005. 2. 1.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하의 보도에서 방송사가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5)</sup>

법원은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자. 판결(2004가합6237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자. 판결(2005가합26111).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조선일보의 2004. 7. 16. 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명 조사』 제하의 기사, 2004. 7. 17. 자 ‘김대중 칼럼’의 큰 제목 『국가의 틀을 바꾼다?』와 소제목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 등으로 인해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출신 김 모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6)</sup>

법원은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병원장이자 의사인 원고는 KBS 「뉴스 9」 프로그램 중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제보자를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과립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7)</sup>

법원은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 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V.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최근에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였다. 법원은 언론사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MBC가 2005. 7. 29. 「뉴스플러스 앵커 오니」 프로그램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백션』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에 관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 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sup>8)</sup>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자. 판결(2004가단256802).

7)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자. 판결(2005가합1854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자. 판결(2005가단59554).

## VI. 인터넷 언론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자가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엔에이치엔과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sup>9)</sup>

법원은 “엔에이치엔이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

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는 피고 신도가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 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자 이에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은 2005. 1. 20.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원고 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원고 교회가 들쭉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자 오마이뉴스 및 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sup>10)</sup>

법원은 “교회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VII. 결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6년 국내언론관계판결은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자. 판결(2005가단1830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자. 판결(2005가합18950).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판결은 없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2006년 언론관계판결의 주요 동향을 요약하면 첫째,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 결정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근거로 언론사의 자유 경쟁을 지지하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후속 논의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둘째,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적 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되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같이 사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판결들도 많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실로 주목된다.

셋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언론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넷째,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내지는 제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간의 경쟁의 심화로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꾸준하였다.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기관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판결이 이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인터넷이 일정 부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판결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는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6년 언론관계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맺는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